

# 협력회사 지속가능경영 가이드라인

# THINKWARE

목차

## 1. 개요

### 1.1 목적

### 1.2 적용대상

## 2. 윤리경영

### 2.1 투명경영 및 반부패

### 2.2 이해상충 방지

### 2.3 불공정 거래방지

### 2.4 위조부품 방지

### 2.5 수출제한 준수

### 2.6 정보보호, 지적재산 보호 및 정보공개

### 2.7 책임있는 자재구매

## 3. 환경

### 3.1 환경경영시스템 구축

### 3.2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 3.3 수자원 관리

### 3.4 대기오염물질 관리

### 3.5 폐기물 관리

### 3.6 화학물질 관리

## 4. 노동/인권

### 4.1 차별금지

### 4.2 임금 및 복리후생 제공

### 4.3 근로시간 관리

### 4.4 인도적 대우

### 4.5 결사의 자유 보장

### 4.6 아동노동 금지 및 강제노동 금지

## 5. 안전보건

### 5.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5.2 기계, 기구, 설비의 안전관리

5.3 비상상황 대응

5.4 사고관리

5.5 안전진단

5.6 보건관리

6. 경영시스템

6.1 기업성명서 공시

6.2 담당자 선임

6.4 리스크 점검

6.5 교육 및 소통

6.6 정보관리

6.7 고충처리 제도운영

6.8 거래업체(하위 협력회사) 관리

7. 준수평가 및 지속적 개선

7.1 일반원칙

7.2 협력회사 지속가능성 평가

7.3 지속적 개선

첨부 1 지속가능경영 평가설문지

## 1. 개요

### 1.1 목적

팅크웨어(주)는 협력회사 지속가능경영 가이드라인을 통해 팅크웨어(주)와 협력회사가 경영을 영위해 나감에 있어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며,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상호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동반 성장해 나가하고자 합니다.

팅크웨어(주)는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지역에서 높은 수준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설정하고 성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공급망에 대한, 지배구조경영원칙, 환경 및 안전보건경영원칙, 사회적 책임에 대해 기준을 확립하고 지켜가고자 합니다.

팅크웨어(주) 또는 팅크웨어(주)가 지정한 외부기관은 협력회사가 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협력회사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대한 협력회사의 중대 위반사항이 요청기한 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팅크웨어와의 거래가 중단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RBA 가이드라인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ILO 및 ISO 등의 기관에서 제정한 글로벌 표준 및 가이드라인은 추가 정보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팅크웨어(주) 협력회사 관리정책 및 기준 변경 등에 따라 가이드라인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본 가이드라인과 현지법규상 내용이 상충될시에는 보다 높은 기준이 우선 적용됩니다.

## 1.2 적용대상

본 가이드라인은 톱크웨어(주)가 협력회사들에게 요구하는 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의 적용은 톱크웨어(주) 제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부품 및 서비스를 설계, 판매, 제조 또는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을 포함합니다.

모든 협력회사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하며, 해당 협력회사에 조립, 부품, 원자재 및 포장 등을 제공하는 모든 하위 공급망에도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 2. 윤리경영

### 2.1 투명경영 및 반부패

2.1.1 협력회사 임직원은 사업을 영위하는 각 국가별 최고수준의 청렴성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2.1.2 협력회사 임직원은 업무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뇌물수수, 공갈, 횡령, 알선, 청탁 등을 해서는 안되며, 약점이나 흠결 등을 이용하여 부당한 대가를 의도해서도 안 됩니다.

### 2.2 이해상충 방지

2.2.1 부적절하고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뇌물이나 기타 다른 대가를 약속, 제안,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허가하거나 이를 수령해서는 안 됩니다.

2.2.2 사업기회를 획득, 유지하거나 타인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하거나 그 외 부적절한 이익을 목적으로 직접적으로 또는 제 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특정가치를 약속, 제안, 제공하거나 이의 제공을 허가하거나 수령하는 행위 모두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 **2.3 불공정 거래방지**

2.3.1 협력회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각 국가별 공정거래 관련 법령 및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2.3.2 협력회사는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거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등 불공정한 거래 등을 통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2.3.3 협력회사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공급량, 거래지역, 거래조건 등에 관해 다른 사업자 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해서는 안됩니다.

2.3.4 협력회사는 경쟁업체, 협력업체 또는 타기관으로부터 부정확한 방법으로 정보를 획득하지 않으며, 또는 제 3자가 부정하게 획득한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해서는 안됩니다.

## **2.4 위조부품 방지**

협력회사는 승인되지 않은 원재료 및 부품 등을 생산, 사용해서는 안되며, 위조된 원재료 및 부품 등을 사용, 판매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위조부품이 사용 또는 생산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정부 또는 고객사에 즉각 통보해야 합니다.

## **2.5 수출제한 준수**

협력회사는 수출제한과 관련한 국가별 법률 및 국제적 규약을 준수해야 하며, 수출제한, 경제제재에 해당하는 국가, 지역, 개인과 거래해서는 안됩니다.

## **2.6 정보보호, 지적재산 보호 및 정보공개**

2.6.1 협력회사는 고객사 및 거래업체의 영업비밀이나 보안을 요하는 정보를 무단유출

하지 않으며, 업무수행시 취득한 정보는 사전허가 및 승인없이 보관 및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2.6.2 협력회사는 고객사 및 거래업체가 보유한 지적재산권을 존중해야 하며, 협력회사가 보유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지적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는 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6.3 협력회사는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처리, 전송 및 공유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2.6.4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협력회사의 회계장부 및 업무기록에 정확하게 반영되어야 합니다. 협력회사의 노무, 안전보건, 환경관리 실태, 경영활동, 지배구조, 재무상태, 성과제 대한 정보는 해당 법규 및 일반적인 산업계 관행에 따라 공개되어야 합니다. 공급망내 관련 분야 실태 및 관행에 대한 기록 위조나 부실표기는 용인될 수 없습니다.

## 2.7 책임있는 자재구매

2.7.1 협력회사는 어떠한 경우라도 국제사회에서 인권침해와 환경파괴로 심각한 우려가 예상되어 사용을 제한하는 특정 원산지의 광물(탄탈륨, 텅스텐, 주석, 금, 코발트 등)을 당사 공급망내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2.7.2 자사 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관련물질이 콩고민주공화국 또는 인접 국가에서 심각한 인권침해, 환경파괴 등을 일으키는 무장세력에게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재원이나 편익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물질의 원산지, 거래처 등을 포함한 모든 공급망에 대해 관련 물질의 사용여부를 추적해야 하며, 이를 통해 협력회사는 관련물질의 원산지를 증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톱크웨어(주)의 요청시 관련 증빙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 **3. 환경**

#### **3.1 환경경영시스템 구축**

3.1.1 협력회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환경관련 법률 및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사업운영에 필요한 모든 환경관련 인허가를 취득 및 유지해야 합니다.

3.1.2 협력회사는 사업운영에 따른 환경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환경관련 교육을 포함하여 조직, 계획, 절차, 성과점검 등으로 구성된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을 운영해야 합니다.

#### **3.2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3.2.1 협력회사는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3.2.2 협력회사는 전사 및 사업장 단위로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또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3.3 수자원 관리**

3.3.1 협력회사는 수자원 사용량 및 폐수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3.3.2 협력회사는 수자원 사용량 절감 및 재활용량 증대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또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은 법적 기준 혹은 그 이상의 내부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

#### **3.4 대기오염물질 관리**

협력회사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법적 기준 혹은 그 이상의 내부기준을 수립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 **3.5 폐기물 관리**

3.5.1 협력회사는 폐기물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3.5.2 협력회사는 적절한 방법을 활용하여 매립, 소각되는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폐기물 재사용, 재활용을 확대하고 폐기된 원재료 및 부품 등을 회수하도록 노력 해야 합니다.

3.5.3 협력회사는 생산하는 제품의 전체 수명주기를 고려하여 폐기물의 매립, 소각시 환경영향을 미치는 잔유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3.6 화학물질 관리**

3.6.1 협력회사는 사업운영 과정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이 운송, 보관, 사용, 폐기시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위해성 및 유해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표기하거나 공개해야 합니다.

3.6.2 협력회사는 조달, 생산, 판매, 유통하는 원재료 및 부품 등에 인체 또는 환경에 유해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REACH, RoHS 등)

## **4. 노동/인권**

### **4.1 차별금지**

4.1.1 협력회사는 성별,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장애, 나이, 가족현황, 사회적 신분 및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임직원의 고용, 승진, 교육 등의 대우에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4.1.2 협력회사는 임금의 지급 및 복리후생 제도 운영에서 임직원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4.1.3 협력회사는 임직원의 모집, 채용 시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조건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 4.2 임금 및 복리후생 제공

4.2.1 협력회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률 및 제도를 준수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은 정해진 날짜에 지급해야 하며, 임직원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된 급여명세서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4.2.2 협력회사는 임직원에게 쾌적한 업무환경을 제공하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4.2.3 협력회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률 및 제도에서 규정하는 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임직원의 경력개발 및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4.3 근로시간 관리

4.3.1 협력회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휴식을 포함한 근로시간을 관리해야 합니다.

4.3.2 협력회사는 임직원이 원하지 않는 연장근로를 지양해야 하며, 불가피한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정당한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4.3.3 협력회사는 임직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 **4.4 인도적 대우**

4.4.1 협력회사는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근로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지시를 자제해야 합니다.

4.4.2 협력회사는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사전에 고지하며, 자발적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4.4.3 협력회사는 임직원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인 직장 괴롭힘을 금지해야 하며, 직장 괴롭힘의 피해 임직원에게는 요청에 따라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가해 임직원에게는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4.5 결사의 자유 보장**

4.5.1 협력회사는 임직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며, 정당한 교섭단체 설립과 운영을 허용해야 합니다.

4.5.2 협력회사는 임직원의 대표자와 단체교섭 사항에 대해 성실히 협의에 임해야 합니다.

4.5.3 협력회사는 임직원의 대표자 부재시 개별 임직원이 교섭사항을 자유롭게 건의하도록 합니다.

#### **4.6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 금지**

4.6.1 협력회사는 어떠한 형태의 아동노동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신분증, 출생증명서 등 합법적 서류를 통해 임직원 및 취업지원자의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4.6.2 협력회사는 연소자를 고용할 경우 안전보건상 고위험 업무에 투입하지 않아야 하

며, 연 소자가 노동으로 인해 교육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4.6.3 협력회사는 아동노동에 관여되어 있거나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거래업체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지 않아야 하며, 상기 사실을 확인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4.6.4 협력회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근로기준 법률에 따라 임직원을 작업에 투입해야 하며,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이나 임직원 의사에 반하는 의무적 근로를 금지해야 합니다.

4.6.5 협력회사는 임직원의 개인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신분증, 사증 등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으며, 강제노동을 목적으로 폭행, 협박, 감금 등 신체적/정신적 속박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4.6.6 협력회사는 신체적/정신적 속박이나 채무관계에 의한 강제노동 등에 관여하는 거래업체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지 않아야 하며, 상기 사실을 확인한 경우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5. 안전보건**

### **5.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5.1.1 협력회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안전보건 관련 법률 및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사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안전보건 관련 인허가를 취득·유지해야 합니다.

5.1.2 협력회사는 사업 운영에 따른 안전보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조직, 계획, 절차, 결과 점검 등으로 구성된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을 운영해야 합니다.

### **5.2 기계·기구·설비의 안전관리**

5.2.1 협력회사는 사업장 내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안전성을 정

기적으로 점검, 평가해야 합니다.

5.2.2 협력회사는 사업장 내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장치, 방호벽, 긴급장치 등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5.2.3 협력회사는 임직원 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 보호구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전 보호구는 임직원이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되어야 합니다.

### 5.3 비상상황 대응

5.3.1 협력회사는 자연재해, 집단감염, 화재 및 안전 사고 등 비상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비상상황 발생 시 보고, 대응, 후속조치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매뉴얼을 갖추어야 합니다.

5.3.2 협력회사는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률, 자체 수립된 계획 및 매뉴얼에 따라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5.3.3 협력회사는 비상상황 발생 시 탈출로, 유도등, 화재 감지기·경보기, 소방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5.4 사고 관리

5.4.1 협력회사는 산업재해 또는 질병 발생 현황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5.4.1 협력회사는 산업재해 또는 중대한 질병 발생 시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임직원을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5.4.3 협력회사는 산업재해 또는 중대한 질병이 발생한 경우, 그 발생원인을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5.5 안전 진단

5.5.1 협력회사는 사고위험 및 유해인자에 임직원이 노출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업공간의 안전 위험성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평가결과는 임직원에게 알려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기계·기구·설비를 개선해야 합니다.

5.5.2 협력회사는 안전 위험성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임직원에게 작업공간의 사고위험 및 유해 인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해당 정보는 임직원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해야 하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해야 합니다.

5.5.3 협력회사는 임산부, 연소자 등을 안전보건상 고위험 업무에 투입하지 않아야 하며, 장애인, 이민자 등 기타 사회적 취약 임직원이 작업에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근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5.6 보건관리

5.6.1 협력회사는 임직원에게 휴게공간, 화장실, 식당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해당 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5.6.2 협력회사는 임직원에게 기숙사를 제공할 수 있으며,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안전표지, 조명, 냉난방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기숙사에는 적절한 외부인 출입제한 장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5.6.3 협력회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건강검진 법률에 따라 임직원을 대상으로 일반건강 검진 또는 특수건강검진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건강검진 결과 필요한 경우 임직원의 작업공간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의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 **6. 경영시스템**

### **6.1 기업 성명서 공시**

6.1.1 협력회사는 톱크웨어(주)에서 배포한 본 가이드라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사회적 책임 이행 의지를 대내·외에 전파해야 합니다.

6.1.2 협력회사는 본 가이드라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사회적 책임 이행 의지를 경영진 신년사, 내부지침,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사내에 공유해야 합니다. 또한, 홈페이지, 사업 보고서, 홍보물 등을 활용하여 외부에 공개할 것을 권장합니다.

### **6.2 담당자 선임**

6.2.1 협력회사는 사회적 책임 활동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6.2.2 협력회사는 사회적 책임 활동 계획 수립과 이행현황을 감독하는 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 **6.3 리스크 점검**

6.3.1 협력회사는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 분야의 리스크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6.3.2 협력회사는 중대한 리스크를 발견한 경우, 해당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 **6.4 교육 및 소통**

6.4.1 협력회사는 본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사항과 본 가이드라인 관련 법률 및 제도에서 다루는 사항을 임직원에게 교육해야 합니다.



6.4.2 협력회사는 본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사항에 대한 추진계획 및 이행성과 등을 임직 원에게 공유해야 합니다.

## 6.5 정보관리

6.5.1 협력회사는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 분야의 현황 및 리스크 관련 정보를 정확 하게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6.5.2 협력회사는 사업을 운영하는 국가별 법률, 산업단체, 사업계약을 체결한 중요 고객사 등 에서 해당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법에서 금지하지 아니하는 한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6.6 고충처리 제도 운영

6.6.1 협력회사는 임직원이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 분야의 법률 및 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 또는 인지하거나, 관련하여 개인의 권리 및 이익이 침해당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고충처리 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6.6.2 협력회사는 임직원이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위협, 보복, 조롱 등 불합리한 조치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해야 합니다.

## 6.7 거래업체(하위 협력회사) 관리

6.7.1 협력회사는 제품 혹은 서비스를 기획, 설계, 판매, 제조하는데 있어 계약을 맺은 거래업체(하위 협력회사)에게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 요소를 관리하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6.7.2 협력회사는 거래업체(하위 협력회사)가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 분야의 법

를 및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거나, 관련 리스크 등을 인지한 경우, 거래업체(하위 협력 회사)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유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7. 준수평가 및 지속적 개선

### 7.1 일반원칙

본 가이드라인의 2항에서 6항까지 소개된 기준은 톱크웨어(주) 공급망 지속가능경영 추진의 기본원칙입니다. 톱크웨어(주)는 공급망 지속가능경영의 모범적 관행 정립과 지속가능성 평가를 통해 비용을 줄이고 품질을 향상시키며 동시에 사업추진으로 인한 사회 영향과 환경, 안전보건 영향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 7.2 협력회사 지속가능성 평가

7.2.1 톱크웨어(주)는 협력회사와 하청업체의 지속가능경영 성과와 효율성을 점검하기 위해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할 것입니다.

(1) 협력회사는 본 가이드라인 준수여부에 대해 톱크웨어(주) 또는 톱크웨어(주)가 지정한 제3 자가 진행하는 서면점검 또는 현장방문시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및 이행수준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2) 협력회사는 본 가이드라인의 준수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적절한 문서를 작성·관리해야 하며, 해당 문서는 사업운영에 대한 실제와 사실을 기반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3) 협력회사는 본 가이드라인의 준수여부에 대한 서면점검 혹은 현장방문을 통해 도출된 결함이나 위반 사항을 시의적절하게 개선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 및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7.2.2 평가방식

(1) 텡크웨어(주)는 협력회사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지속가능경영 및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을 실시합니다. 설문 문항은 협력회사 지속가능경영의 핵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지속가능성 평가 설문결과는 분석을 통해 협력회사별 지속가능성 점수로 환산됩니다.

(3) 텡크웨어(주)는 전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연간 지속가능성 평가 설문을 실시합니다. 최초 입찰업체의 경우에도 설문을 통해 지속가능경영 관련 정보 및 성과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4) 텡크웨어(주)는 입찰평가지 지속가능경영 관련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내부개선 혹은 경영 시스템상의 변화가 있을시 자발적으로 정보를 업데이트하도록 권장합니다.

### 7.2.3 입찰 및 연간 평가지 지속가능경영 성과 반영

(1) 지속가능경영 성과 설문을 통해 산출된 협력회사 지속가능성 점수는 입찰 및 연간 평가 시 협력회사 경영 현황을 평가하는 주요 항목으로 통합되어 활용됩니다.

(2) 협력회사가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고 성과를 향상하도록 텡크웨어(주)는 협력회사 지속가능성 점수의 가중치(협력회사 경영역량평가내 지속가능경영 성과의 비중)를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할 것입니다.

### 7.2.4 협력회사 등록취소 및 지위정지

(1) 등록된 협력회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 비윤리행위, 고객정보 유출 등의 사유로 인해 부적정 협력회사로 판단된 경우
- 신용등급 불량 등 법정관리로 협력회사 지위정지 후 6개월이 경과한 경우
- 불성실업체로 제재 받는 경우

- 품질, 납기, 가격, 협력도 등에서 심각한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인권, 노동, 보건안전, 환경 등과 관련하여 톱크웨어(주)의 이익이나 명예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경우

(2) 등록된 협력회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력회사 지위를 정지할 수 있다.

- 부도, 법정관리(인가전), 압류, 휴업, 인권, 노동, 보건안전, 환경 등의 문제로 지속적인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이행을 불응하거나 지연시킨 경우
- 갱신평가 결과 부적합 되는 경우(품질시스템 평가의 경우 2회 부적합시)로서 신용평가 기관과의 공동실사 결과 톱크웨어(주) 사업참여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7.3 지속적 개선

7.3.1 톱크웨어(주)는 신규 동향 파악과 누적된 관련 업무 경험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내부/ 협력회사 지속가능경영 기준을 향상시켜가겠습니다.

7.3.2 지속가능경영 성과가 미진한 협력회사는 개선 계획과 일정 협의를 통해서 해당 협력회사의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향상하는 접근방식을 채택하겠습니다.

7.3.3 협력회사 지속가능경영 개별사안별 상황에 알맞은 기본 개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7.3.4 톱크웨어(주) 협력회사는 톱크웨어(주)의 협력회사 내부 개선, 자원 효율성, 그리고 그 외 톱크웨어(주) 지속가능경영 표준에 맞도록 내부 개선 활동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7.3.5 톱크웨어(주)에서 수립하고 있는 지속가능경영 표준 및 모범사례를 기준으로 내부 개선 계획을 수립, 실행하여야 합니다.

7.3.6 협의된 계획 및 실행 일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첨부 1 지속가능경영 평가설문지

#### 팅크웨어(주) 협력회사 지속가능경영 평가설문지

협력회사명		설문응답일	
담당자		연락처	

팅크웨어(주)는 사회적 책임경영의 원칙과 이념이 Tingkwear(주)의 지속가능성장을 위해 가지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며, 이러한 이해와 실천을 같이 하는 상생의 동반자인 협력회사(어떠한 명칭이든지 Tingkwear(주)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이나 개인이 가지는 가치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Tingkwear(주)는 Tingkwear(주) 협력회사 지속가능경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모든 협력회사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팅크웨어(주)는 협력회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하며, 협력회사가 Tingkwear(주)의 사회적 책임경영 원칙과 이념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성실히 이행하고 준수하기를 권고 드립니다.

본 지속가능경영 평가설문지는 각 협력회사가 가이드라인을 충분히 인지하고 적절히 준수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또한 협력회사 스스로 현황을 진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각 항목의 준수 여부에 대해서 '예', '아니오'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설문항목

### 1. 근로자의 기본적 인권 존중

귀사가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계약직, 임시직 기타 다른 유형의 근로자 포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 하고 존중하며, 이를 위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를 묻는 항목입니다.

항목	주요 내용	준수 여부 (예/아니오)
자발적 근로	1) 우리회사의 모든 근로행위는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으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직 또는 퇴직할 수 있다.	
노동착취 금지와 근로계약계층 보호	2) 우리회사는 관련 적용법규에 따라 15세 미만인 자를 근로자로 사용하지 않는다. 3) 여성, 장애인 등 근로계약계층은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	
근로시간	4) 우리회사는 관련 적용법규에서 정하는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초과근무는 원칙적으로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도록 한다.	
항목	주요 내용	준수 여부 (예/아니오)
임금 및 복리후생	5) 우리회사는 근로자에게 관련 적용법규에서 정하는 최저 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의무적인 복리후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6) 임금은 정해진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임금산정 의 기준을 투명하게 고지한다.	
프라이버시 보호와 인도적 처우	7) 우리회사는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인격 적 존엄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처우를 하지 않는다.	
	8) 근로자에게 성희롱을 비롯한 성적 학대, 체벌과 욕설 등 신체적 또는 정신적 가학 행위 등 비인간적인 대우를 하지 않는다.	

차별 금지	9) 우리회사는 근로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고용 및 승진, 보상, 연수기회 등에서 국적,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사유로 부당하게 근로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인권 침해 방지 절차 마련	10) 우리회사는 인권 침해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관련 제도나 절차를 마련 하여 운영하는 등 근로자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 2. 산업장의 안전과 보건

귀사가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개선하고 있는지, 이러한 활동이 귀사의 상품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묻는 항목입니다.

항목	주요 내용	준수 여부 (예/아니오)
산업안전 및 법규준수	11) 근로자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적절한 장비 설치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련된 산업안전보건 관련법규 를 파악, 등록 및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개인보호장비 및 기술적 통제장치, 안전 작업절차 마련, 안전교육 등)	
산업재해 및 질병 관리	12) 우리회사는 산업재해 및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와 절차 가 있다.	
산업위생과 보건	13) 근로자에게 위생적인 근무환경 및 부대시설을 제공하며, 과중한 피로 와 스트레스 등으로 근로자의 건강이 손상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3. 환경

귀사가 환경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지역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묻는 항목입니다.

항목	주요 내용	준수 여부 (예/아니오)
환경 법규의 준수	14) 협력회사는 환경관련 적용법규를 성실히 준수하고, 동 법규에 서 정하 는 환경 인허가 및 등록 사항을 취득, 유지, 관리한다.	
항목	주요 내용	준수 여부 (예/아니오)
폐기물 절감 및 자원사용 효율화	15) 폐기물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기 위해 공정의 변경, 원료의 대체, 자재 의 재활용 및 재사용 등의 방법을 일부 시행하고 있다. 16) 에너지, 용수 등 자원 사용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이 있거 나 관련 활동을 하고 있다.(친환경 구매,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등)	
환경오염 방지	17) 인체에 유해하거나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을 파 악하고, 안전하게 취급 및 관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 4. 기업윤리

귀사가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기업 윤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윤리적 의사결정과 판단의 기준  
을 마련하여 임직원이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하고 있는지 묻는 항목입니다.

항목	주요 내용	준수 여부 (예/아니오)
공정하고 정직한 업무수행	18) 임직원이 불공정거래에 가담하거나 공정한 시장질서를 훼손 하는 행위 를 하지 않도록 하며, 정직하고 투명하게 업무 수행할 수 있도록 관 리·감독하고 있다.	
뇌물수수 금지와 부패 방지	19) 뇌물수수 금지와 부패 방지에 대한 정책과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임 직원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한다.	



개인정보보호	20) 우리회사는 관련 적용법규에 따라 고객을 비롯한 개인의 정보를 보호 하며, 이를 위한 기술적·물리적 조치를 취한다.
협력업체와의 상생	21) 우리회사는 협력업체와 상호존중의 상생 관계를 지향하며, 자신의 우 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를 강요하지 않는다.
지역사회 공헌	22) 우리회사는 사업활동의 기반이 되는 지역사회에 기여해야 할 책임을 인식하고, 지역사회의 이해관계자들과 사회적 책임을 공유하며, 지역 사회 공헌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 개 정 이 력

개정번호	제/개정일자	쪽수	제 . 개 정 내 용
0	2019.07.01.	15	협력회사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1	2020.10.08.	15	책임있는 분쟁광물 조달에 코발트 추가